

시민 중심, 으뜸 정읍

생산등록번호	기획예산실-811
등록일	2024. 2. 2.
결재일	2024. 2. 2.
공개구분	대국민 공개

주무관	인구정책팀장	기획예산실장
		전결 2024. 2. 2.
고재호	김영국	최창기

「청년층의 지역 정착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」

2024년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 추진계획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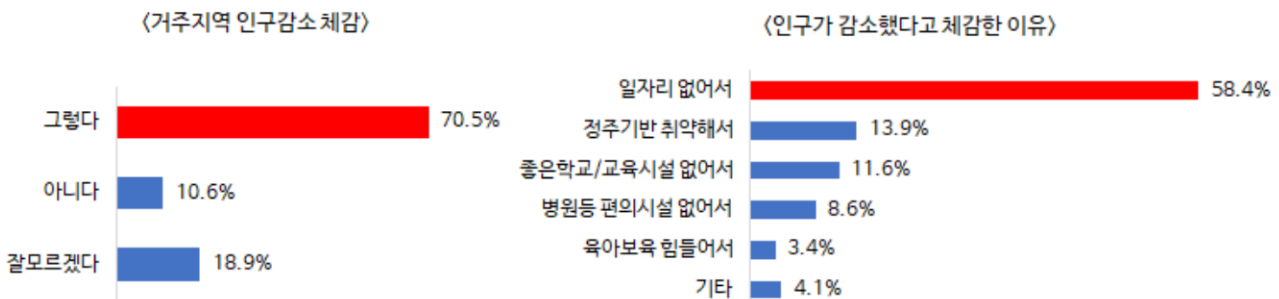
기획예산실
인구정책팀

2024년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 추진계획

- ❖ 지역 성장동력인 청년층의 주거비용 지원을 통해 관외 대학생의 지역 정주 유도 및 청년 정착 활성화 도모

1 추진배경

- 정읍시 청년인구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3.74% 감소하였고, 전북 특별자치도 내 청년인구 감소율보다 1.7배 높은 수준이며, 시 단위 지역 중 김제에 이어 두 번째로 청년인구 감소율이 높음.
- 2021년 추진한 「정읍시 인구정책 수립 연구」¹⁾용역 결과, 인구 감소의 주된 이유로 **일자리 부족(58.4%)**과 **정주기반 취약(13.9%)**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음.



-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, 주거 불안은 만혼·비혼 현상으로 이어지고, 정주 여건의 부담은 청년층의 지속적인 이탈을 불러와 혼인감소 및 저출산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.
-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정주여건 조성을 통한 자립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며, 경제적 자립성이 취약한 대학생의 현실을 고려, 부담이 큰 **주거비용 일부**를 **지원하여 지역 정주 및 정착 활성화를 도모**하고자 함.

1) 2021. 3월 ~ 8월, 정읍시 인구정책 수립 연구 용역, 전북연구원

2 사업 개요

- 사업기간 : 2024년 3월 ~ 8월 (상반기: 3월, 하반기: 8월)
- 사업비 : 50백만원 (시비)
- 사업대상 : 전입 대학생 100명
- 지원금액 : 주거(기숙사 및 주택임차)비용 연 50만원 지원
- 지원기준 : 연 2회 분할지급 (학기당 25만원)
- 추진근거 : 주거기본법,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

3 세부 추진계획

- 신청자격 :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※ **신청일 기준**

구분	자격조건	비고
거주기준	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, 정읍시에 전입 신고하고 <u>6개월이상 계속 거주한 자</u>	
대상학교	- 본교가 정읍으로 공시된 대학교(원) : <u>전북과학대학교</u> - 본교는 관외이나 캠퍼스가 관내에 있는 대학교(원) : <u>전북대학교 첨단과학캠퍼스</u>	
자격기준	<u>해당학교 재학생</u> (당해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 포함) ※ 휴학생은 제외	

- 제외대상 :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

지원 제외 대상

-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원격대학(방송대학, 통신대학, 방송통신 대학 및 사이버 대학)에 재학중인 학생
- 비학위 과정에 재학중인 학생(평생 교육과정 등)
-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
- 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대학생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

○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

- 신청장소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(주민등록상 주소지)
- 신청접수 : 2024. 3. 4.(월) ~ 4. 5.(금) ※ 하반기는 8월중 접수
- 신청방법 : 직접방문 (우편, 팩스 접수 불가)
※ 구비서류 지참, 평일 근무시간 내 본인 방문접수 원칙.
- 처리절차

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여부 확인		지급 대상자 검토 (적격여부 심사)	지원 대상자 결정 통보	지원금 지급
신청인 주소지 소재 읍·면·동 주민센터		기획예산실	기획예산실 (대상자 개별통보)	기획예산실
상반기	2024. 3. 4.(월) ~ 3. 29.(금)	2024. 4. 1.(월) ~ 4. 5.(금)	2024. 4. 8.(월) ~ 4. 12.(금)	2024. 4. 15.(월) ~ 4. 17.(수)
하반기	2024. 8. 26.(월) ~ 9. 20.(금)	2024. 9. 23.(월) ~ 9. 27.(금)	2024. 9. 30.(월) ~ 10. 4.(금)	2024. 10. 7.(월) ~ 10. 11.(수)

※ 사업 신청 접수 시작일은 학사일정 상 각 학기 개강일을 기준으로 설정

○ 지원내용

- 지원금액 : 학기별 25만원씩 연2회 최대 50만원 지원
- 학기기준 : 1학기(3월~8월), 2학기(8월~익년2월)
- 지급시기 : 매년 4월(상반기), 10월(하반기) 지급
- 지급방법 : 현금지급(계좌이체)

○ 신청서류

-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신청서 1부.
-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1부.
- 기숙사비납입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.
- 임차료 납입 증명서 1부.
- 통장사본 1부.

○ 지원환수

- 해당 학기 재학 중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
- 지원금을 지급받은 대학생이 해당 학기 중 주소를 타 시군구로 이전한 경우

4 금 후 계 획

-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 시행 공고 · 3월(상반기), 8월(하반기)
- 신청접수 및 서류검토(각 읍면동) · · · · · 4월(상반기), 9월(하반기)
※ 읍면동 : 신청서, 첨부서류, 관리대장 등 작성·검토 후 공문발송(원본별송)
- 신청서 검토 및 대상자 결정 통보 · · · · · 4월(상반기), 9월(하반기)
- 주거비용 지원금 지급 · · · · · 4월(상반기), 10월(하반기)

- 붙임 1.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1부.
2.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1부. 끝.